

의안번호	제 60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4월 28일 (제355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 안 자	운영위원장 임병운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28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600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8일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임병운

1. 주 문

가. 민선 6기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현안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그 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조사하여 충청북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다. 위 원 수 : 9명 이내로 한다.

라.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분류됐던 에어로폴리스와 이란 2조원 오송투자유치 실패에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마저 백지화되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존폐의 기로에 있음.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충청북도 민선 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무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및 산단조성, 그간의 투자유치 실적 진위규명, 입주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취지에 부합된 효과적 개발방향과 집적화 방안, 현실적 투자유치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제현안 추진 실패 재발 방지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인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3. 6, 2009. 7. 10, 2014. 6. 27>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 2004. 11.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0. 31>][제7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 7. 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7. 10, 2014. 6. 2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0. 31>][제8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10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 <개정 2014. 10. 31>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 <개정 2014. 10. 31>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신설 2014. 10. 31>[제목개정 2014. 10. 31]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